

지방소비자행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송인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제미경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Insook Song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kyung Ja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과 운영 |
| II. 이론적 배경 | VI.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비교분석 |
| III. 연구방법 | VII. 결론 및 제언 |
|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분석 | 참고문헌 |

< Abstract >

In this paper 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studied.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and their gener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of these wide area self-governments are also investigated. The data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web-site of each self-government and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 and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obtained by requesting each self-government to report administration information during May through October in 2001.

13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except Daegu, Incheon, and Jeju have own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Major parts of these regulations conform the standard regulation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any of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reported that they do not have meetings constantly. Moreover since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is the typical subject of

meetings, the committees do not seem to properly play the role of a consumer protection policy authority. Contents of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of many self-governments are simple description of detailed practicing plans according to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By criticizing the problems aroused during the stud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self-governments, suggestions are given which will help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olicy of wide area self-governments.

주제어(Key Words): 소비자보호조례(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지방자치단체(local self-government),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I. 서론

소비자문제의 많은 부분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책과제의 하나로 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여기에 부응하여 1995년 소비자보호법의 2차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 4차 개정시에는 소비자보호법상의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여 지자체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2001년 5차 개정시에는 국가가 지방 소비자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소비자행정의 내실화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발표되어 지방소비자행정에 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강성진·김인숙, 1996, 1997; 송인숙 외, 1997; 여정성, 1998; 이광용, 2000)과 지방 소비자지원행정에 초점을 둔 연구들(송인숙, 1998; 제미경·송인숙, 2001; 박지영, 2002)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은 아직까지 미약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관련 업무실태는 대부분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단지 집행만 하는 상태임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는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러한 행정의 집행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은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 입법방향을 연구한 강창경(2000)도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단체 역할을 주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1996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소비자보호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1996년 대전광역시와 소비자보호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에 2001년 8월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37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지원행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데는 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입법활동과 조례에 담긴 소비자보호 입법의 현황 그리고 실제로 조례의 집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 현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소비자행정이 해당 지자체의 소비자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소비자행정 연구에서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현황이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

에 관심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16개 광역시의 조례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정부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응한 각 광역시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근거를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비롯한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례의 의의와 제정범위

우리 나라는 헌법 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을 조례라고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법 제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정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17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례간의 상하위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조례가 되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하위조례로 하위조례는 상위조례를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행정연구소 편, 2000: 124-127).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과정도 기본적으로 국가입법과정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입법방침이 정해지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상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의원 또는 그 보좌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의 주무부서에서 기초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어 초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담당자는 가장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거쳐 조례안의 입법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행정 담당공무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초안이 작성되면 다음 단계로서 당해 조례안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 주요골자, 주요토의 과제, 예산조치 필요여부, 관련부서와의 협의이행여부 등에 관한 요강을 작성한 후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할 최종 조례안을 만들게 된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고 부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김홍대, 1999: 284-308).

2.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근거와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해야 할 근거로는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 명시되어 있다. 또 소비

자보호법에서는 5조부터 13조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5조 1호에 가장 먼저 명시되어 법령과 조례의 제정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조례 역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보호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소비자 규제행정의 대상과 목적 및 범위의 조정 등에서 그러하다.

소비자보호조례 내용의 범위를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조직관리운영, 소비자보호시행계획 등의 총칙적 사항과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시험·검사,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 소비자협동조합의 육성과 같은 소비자지원행정과 위해의 방지, 거래의 적정화, 계량·규격·표시의 충실, 광고의 적정화와 같은 규제행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1년에 연구보고서(신원득·박인섭, 1991)로 조례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시안은 총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두 구성축은 규제행

정과 지원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규제행정으로 2장의 소비자의 안전, 3장의 계량·규격·표시 및 거래의 적정화를 지원행정으로 4장의 소비자피해의 구제, 5장의 소비자의 계몽 및 정보제공, 6장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담고 있다.

그러나 1995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제시한 구성은 소비자의 안전대책의 강구, 부당거래의 방지 등,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모두 소비자권리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묶어 2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규제행정과 지원행정으로 구분해보면 1, 2절의 소비자의 안전대책의 강구, 부당거래의 방지 등은 중앙기관의 위임을 받은 사무로서 규제행정의 내용이며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의 지원은 지원행정의 내용이다. 각 자치단체는 실제 규제행정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지원행정부문에 자치단체 고유의 활동을 규정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3. 일본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지방소비자행정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보호조례 및 규칙의 제정이 이미 197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이를 근거로 지방

<표 1> 소비자보호조례의 내용과 범위

사무구분	기 준	내 용	범위 및 대상		
지방 자치 단체 사무	고유 사무	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와 자치단체 존립 목적에 관련된 사무	- 행정조직관리운영 - 소비자보호시행계획수립	총칙적 사항	
	단체 위임 사무	국가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기능상 자치단체의 재량권 하에 위임된 사무(특히 자치단체에 위임된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사무로 간주)	-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구제 - 시험, 검사	지원행정	실질적사항
	기관 위임 사무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처리(집행)을 위임한 사무(개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	- 위해의 방지 - 거래의 적정화 - 계량·규격·표시의 충실 - 광고의 적정화	규제행정	실체적사항

자료: 신원득·박인섭, 소비자보호조례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43쪽에서 인용

소비자행정운영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법체 제형식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계통으로 동일하여 우리 나라 조례제정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신원득·박인섭, 1991)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 중 대도시 자치체가 특히 소비자행정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데, 1971년 동경도에서 소비자보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먼저 제기되었으나 그 실현은 1972년 神戸市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후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생활안정 긴급대책 조례 등이 여러 도시에서 제정되면서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조례제정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 10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로 볼 때 조례제정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약 2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이 앞서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치행정 역시 우리보다 앞서 있으며 소비자행정부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잘 정비되어 실천되고 있다. 일본 지방소비자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강성진(1996)에 의해 비교적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1961년 동경도의 '소비자경제과' 설치를 필두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행정 전담과가 설치되어 지역의 소비자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소비자지원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생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소비자불만처리,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상품테스트 등의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부천시역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입지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가와사키(川崎)시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각분야별 제언을 한 연구(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를 보면 소비자분야를 중요한 지방소비자행정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 분야의 지방행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역시 먼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의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소비자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소비자행정기구의 확대,

소비자상담, 교육, 연구활동을 총괄한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자치행정을 연구하여 모델로 삼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소비자행정이 주요한 지방행정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소비생활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한 일본의 소비자행정을 우리 자치행정의 모델로 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의 소비자보호조례의 내용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보호조례는 16개 광역 시·도의 2001년 8월 현재 시행 조례를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한 자료를 2001년 9월에서 10월까지 해당시도에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다.

요청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현재의 위원구성과 96년 이후의 위원회 개최현황과 내용을 요구하였고 만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유사위원회의 개최현황과 내용을 요구하였다. 요청결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에서 회신 받았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1년 자료를 요청하였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전북의 6개 자치단체에서 회신 받았다. 이상의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내용분석을 하였다.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 분석

1.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은 1980년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 3차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비자보호표준조례안을 1996년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시·도는 이 표준안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이 1999년 5차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된 소비자보호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 다시 각 시도에 제공되었다. 개정내용은 위험방지를 위한 시험·검사·조사·물품의 수거·파기,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2001년 8월 현재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현황은 <표 2>에서 보듯이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소비자보호조례가 있는 곳은 13개 광역 자치단체이고,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는 곳은 대구, 인천, 제주 3곳인데, 이들 중 대구는 지역경제협의회조례가 인천과 제주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남아 있었다. 이중에서 대구는 1999년 6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지역경제협의회조례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대구, 인천, 제주의 경우 1996년부터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 제 1차 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1987년부터 설치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구, 인천, 제주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태만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의 입법노력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 행정을 제대로 수행

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2.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 비교

현재,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는 대구, 인천,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비자 행정의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1999년 행정자치부가 만든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1. 총칙, 2. 소비자권리보장,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보칙, 5. 벌칙의 순으로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았다.

이 중에서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세분하여, 1) 안전대책의 강구, 2) 부당 거래의 방지, 3) 소비자피해의 구제, 4)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4. 보칙의 경우 1999년 2월 5일 제 5차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정보 청구권'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위해·부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5. 벌칙의 경우에도 제 5차 소비자보호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항이 입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1) 조문의 양 비교(장/조)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문의 양을 비교해보면, 40개 조문 이상인 곳은 경기, 강원 2개 자치단체이고, 30조문 이상은 부산,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8개 자치단체이며, 서울과 충북 2개 자치단체가 20개 조항 이상이고, 울산의 경우는 18개 조항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구성되어 있다.

장, 절의 구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조문의 양

<표 2>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2001년 8월 현재)

소비자보호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제주

<표 3>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 구성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최종개정일(년/월)	99.7.31	99.12.30	00.12.30	01.1.9	00.6.15	01.3.5	00.7.29	01.1.12	01.8.30	98.9.22	97.5.15	01.8.1	01.7.5
조문의 구성(장/ 조)	6/28	4/35	7/39	7/38	/18	7/42	5/41	4/27	4/31	4/34	8/39	4/34	5/35
1. 총칙	○	○	○	○	○	○	○	○	○	○	○	○	○
2.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안전대책의 강구	△	△	○	○	○	○	○	○	○	○	○	○	○
2) 부당거래의 방지	○	○	○	○	○	○	○	○	○	○	○	○	○
3) 소비자피해의 구제	○	○	○	○	○	○	○	○	○	○	○	○	○
4) 소비자 및 단체지원	○	○	○	○	△	○	○	○	○	○	○	○	○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	○	△		○	○		○	○	○	○	○
4. 보칙													
1) 정보청구권							○	○					○
2) 공표	○	○	○	○	○	○	○	○	○	○	○	○	○
5. 벌칙							○	○					○
소 1. 소비자교육	○	○	○	○		○				○	○		○
비 2. 소비자정보제공			○	○			○	○	○	○		○	○
자 3. 소비자소송지원			○			○							
지 4. 소비자상담기구 1) 설치	○	○	○	○	○	○	○	○	○	○	○	○	○
원 2) 전문상담원 배치		○			○	○	○	○					

법례: ○ 되어 있음 △ 부족하게 되어 있음

은 조례의 내용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조문을 가진 조례일수록 소비자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상세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28조), 울산(18조)이 조문의 양이 적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한 충북(27조)의 경우도 조문의 양이 적었다. 즉, 조문의 양이 적은 경우 소비자보호와 소비자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소비자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총 칙

소비자보호조례의 내용 구성에서 우선 총칙의 경

우를 살펴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조례의 '목적' 과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의무' 혹은 '소비자의 권리' 를 담고 있었다.

조례의 목적에서는 소비자보호조례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을 정의하고 이어서 조례의 해당광역단체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기타 의무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

고 있는 곳과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섞여 있었는데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안전할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로 구성된 7대 권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3) 소비자 권리보장

소비자의 권리보장은 안전대책의 강구, 부당거래의 방지,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등 4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안전대책의 강구

소비자안전대책의 강구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위해 물품의 검사, 회수, 수거·파기명령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시장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명시적 규정만을 담고 있다.

(2) 부당거래의 방지

부당거래의 방지는 부당거래의 조사, 표시·광고의 조사, 계량·규격의 조사, 부당 거래의 금지 등을 담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3)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 피해의 구제 역시 1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데, 피해구제 상담창구의 설치, 피해구제 신청, 처리, 조정, 협조, 피해사례의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창구의 설치에 대해 경기도의 경우 전문상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이 만들어져 있고 유급상담원을 두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 부산, 울산, 강원, 충북의 경우도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한 후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울,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피해구제기구 또는 상담실을 설치

한다고 하는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이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소비자상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는 민간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에서는 소비자의 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시험 및 검사, 소비자단체의 등록, 보조금의 지급, 시험·검사시설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1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울산의 경우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선언적 조문만 있고, 그 외의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소비자지원행정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4) 보칙과 벌칙

보칙의 경우에는 정보요청권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왔는데,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한 각종 공표에 대하여는 1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1999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정보요청권은 강원, 충북, 경남의 의 3개 자치단체만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1999년 행정자치부가 소비자보호법 제 5차 개정에 따라 정보청구권을 포함하도록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 소비자보호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벌칙의 경우도 1999년 행정자치부가 소비자보호법 제 5차 개정에 맞추어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을 통보한 바 있는데, 이를 반영한 곳은 강원, 충북,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치단체별 소비자보호조례 특성

이상의 조례비교 결과 대체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해당시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체구성과 내용은 비슷하였으나 좀더 각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세히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었다.

앞의 <표 3>를 보면 총칙의 내용과 규제행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고 지원행정에서 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각 자치단체는 실제 조례제정시 상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규제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의 규제기준을 따르게 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반면 지원행정부문에 자치단체 고유의 활동을 규정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와 경남이 소비자교육실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대전과 경기도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을 담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비용지원, 경기도의 경우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전문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보호와 지원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경남의 경우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판매기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첨가시켜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소비자보호조례에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 초기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 제정 이후 개정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조례 제 3조의 내용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의 제 3

조 '소비자의 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반하여,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는 1999년 행자부의 개정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책무로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충남과 경남의 경우도 시·도지사의 책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해당 입법활동에 충실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를 구분할 수 있었다.

V.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과 운영

1. 소비자보호업무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표 4>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이고, 이 중에서 인천과 제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고 나머지는 후에 새로 제정된 소비자보호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소비자보호조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거나 혹은 물가대책위원회로 소비자보호업무를 이관한 곳인데, 광주의 경우 2001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로 이관한 경우이고, 울산의 경우 1998년부터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의에서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소비자보호조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있으나, 실제 운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대구의 경우 1999년 6월부터 소비자정책심

<표 4> 소비자보호업무관련위원회의 설치현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기 타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광주, 울산	대구(지역경제협의회) 충북(경제정책심의위원회)

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로 통합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 하도록(동 조례 2조 5항)하였고, 충북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 공공요금, 유통, 산업분쟁조정, 소비자정책, 전자상거래 등과 함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을(동 조례 2조 6항)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면 서울은 소비자보호관련 해당위원회 설치의 근거는 있지만 실제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광주, 울산, 대구, 충북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위원회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조조정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으로 인

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그 통폐합대상이 됨에 따라 소비자행정을 후퇴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소비자보호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분석하였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에 그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구, 인천, 제주의 경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따로 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는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표 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정조항 분석 비교표 I(광역자치단체-시)

표준조례 ¹⁾		서울*	부산	대구 ²⁾	인천 ²⁾	대전	광주 ³⁾
위원수	12인 이내(현 구성인원)	15	15	20	10	20	19
위원장	부시장, 부지사	지역경제국장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경제과학국장	행정부시장
회의개최회수	연2회 개최를 원칙	분기별1회	명시안됨	명시안됨	명시안됨	명시안됨	명시안됨
회의	위원장 필요시	√	√	√	√	√	물가대책위원회
소집권	재적위원 과반수요구	√	√			√	운영의 예에 의해
심의 사항	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제정, 개정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제정, 개정		√ (의결자문)
	2.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	√	√	√	√
	4.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	√	√	√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	√	√	√	√	√
*기타	위해상품,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공표			소비생활 합리화 소비자 교육, 계몽	소비생활 합리화 소비자 교육, 계몽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사항	
실무위원회							

규정이 없고 물가대책위원회로 그 기능이 대체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광역자치단체중 시의 경우는 <표 5>에, 도의 경우는 <표 6>에 각각 위원회의 규정내용을 비교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위원수는 표준조례안에는 12인 이

내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그보다 많은 20명의 인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직급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조례안에는 부시장

<표 6>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정조항 분석 비교표 II(광역자치단체-도)

표준조례 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원수		25	20	12	20	20	20	20	24	20
위원장	부시장, 부지사	행정(1)부 지사	행정부 지사	경제통상 국장	행정부 지사	행정부 지사	행정부 지사	소비자보호 담당실 국장	행정부 지사	행정부 지사
회의 개최 회수	연2회 개최를 원칙	분기별 1회	연2회	연1회	분기별 1회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명시 안됨
회의	위원장 필요시	√	√	√	√	√	√	√	√	√
소집권	재적위원 과반수요구		√	√	√	√	√	√	재적위원 1/3이상	
심의 사항	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견 자문)	√(의견 자문)	√		√	√	√	√	소비자보호 관련규정 제정, 개정
	2.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3.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	√	√	√	√		√
	4.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		√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 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	√				√	√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제반 정책, 기타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피해 구제 사항심의	√	√		√	√	√	√	√	√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	√	√		√	√	√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개폐	√	√			√	√			
	*도관여 요금 심의조정	√	√				√		√	
	*도지사 요청사항	√							√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단체협조				√	√	√		√		
실무 위원회		√(투자 진흥관)	√(산업 경제국장)			√(경제 통상국장)	√(경제 통상국장)			

1) 1999. 4. 6 소비자보호표준조례(개정)안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에 준함

2) 대구, 인천, 제주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임

3) 광주 : 2001. 1. 9일부터 조례개정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

또는 부지사로 되어 있었는데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 충북, 경북, 대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따르고 있다.

회의개최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 필요시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표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관한 것,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에 관한 내용과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경우는 물가관련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내용 중 특이한 것은 대전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의내용 중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두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현재 인원과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개최횟수와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위원 수는 대체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구성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이 가장 많고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실제 변호사와 교수, 방송국 편집부장, 신문사 업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없는 전문가들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들도 소비자학전공교수들이 아닌 경영학, 법학 등과 같은 타전공 교수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이들을 소비자학전공자와 같이 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다.

또 위원회의 구성에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경남의 경우는 최근 조례 개정시 소비자대표의 구성비율을 25%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부산, 인천, 광주와 같은 곳은 전혀 개최실적이 없고 강원, 충남, 경남의 경우는 1-2회였다. 회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의내용이라 할수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물가관련심의가 많고 소비자시책 관련내용은 적은 편이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대전과 경북, 충북, 전북, 경기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소비자시책관련 회의가 많았다.

VI.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비교분석

각 자치단체는 재정경제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정부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소비자시책을 세우고 있다. 2001년 각 자치단체의 시책을 수집하여 비교한 결과 <표 8>과 같았다. 이표의 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시책으로 어떤 내용을 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다.

소비자시책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는 없고 대체로 중앙의 시책에 따라 이를 반복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나열하거나 관련행정내용을 해당세부시책으로 수록하고 있다.

1999년의 소비자보호법 4차 개정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포함하고 있어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인 시책수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에 단순히 대응하는 세부행정내용을 지방소비자보호시책으로 담기보다 해당시도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시책에서도 지역에서 빈발하는 소비자문제나 지방행정

<표 7>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비교

내용		지역	서울 ¹⁾	부산	인천	대전	광주 ²⁾	울산 ³⁾	경기
위원수	현 구성인원		29	11	10	19	19		25
위원 구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		5	5	4	3	7		10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14		3	7	9		7
	소비자대표		6	5	2	5	2		4
	사업자대표		2	1	1	3			2
	지방의회의원								
회의개최회수	회의개최횟수(96-01년 사이)		96-1회, 97-1회, 98-3회, 00-2회(물가대책위원회)	없음	없음-폐지 예정	98-2회, 99-1회, 00-1회, 01-1회)	없음	98-3회, 99-2회, 00-2회, 01-2회(물가대책위원회)	99-2회, 00-4회, 01-2회
회의 내용	물가관련회의		7	0	0	0	0	9	8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회의		0	0	0	5	0	0	3
내용		지역	강원	충북 ⁴⁾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위원수	현 구성인원		20	11	19	20	20	13	18
위원구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		9	4	7	5	11	6	4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	4	4	8		3	6
	소비자대표		4	3	5	4	5	2	3(25%이상)
	사업자대표		2	0	2	2	2	2	4
	지방의회의원		2	0	1	1	1		1
회의개최회수	회의개최횟수(96-01년 사이)		01-1회	98-1회, 99-1회, 00-1회, 01-1회	99-1회, 00-1회	97-2회, 98-4회, 99-1회, 00-1회, 01-1회	99-3회, 00-3회	97-2회, 98-1회, 99-1회, 00-1회, 01-1회	96-1회
회의 내용	물가관련회의		1	0	3	5	8	0	0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회의		1	4	0	4	1	7	1

- 1) 서울: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자료임
- 2) 광주: 2001.1.9 조례개정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기능을 담당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임
- 3) 울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만 정보제공 받고 위원구성현황은 받지 못함
- 4) 충북: 2001년도부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소비자정책·물가대책분과위원회로 바뀜
- 5) 제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표에서 제외, 대구: 회신을 받지 못했으므로 표에서 제외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연차적인 행정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아울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최근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비교함으로써 지방소비자행정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8〉 광역자치단체의 2001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비교표

기본방향	부 산	대 구	대 전
1.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대응책 강구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기회확대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통신판매의 피해예방 대책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창구로서 "소비자정보광장"운영 강화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통합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소비넷)운영 -e-consumer site이용 홍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전자거래관련 소비자 제도 홍보 -네티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개인정보 침해 예방
2. 소비자 안전대책 적극추진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리콜제 활성화) -공산품,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통단속 및 감시강화	<소비자 안전 대책 적극추진>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부정불량 식품유통 감시기능 강화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불법 공산물 유통단속 실시 -공산품 품질 검사 실시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유전자변형(GM) 농산물감시제 시행점검 -농약안전사용교육및 홍보강화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의 안전성 제고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통신판매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격 표시제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정확한 가격정보제공을 위한 가격표시제 정착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위조상품 유통행위 근절 -농축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 -불법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물 단속 -부정계량기 등 계량기 단속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소비자 정보 강화 -농산물 원산지 감시, 지도 단속 -가격표시제 홍보 및 지도단속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 지도 감독 및 감시활동 강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피해 구제의 강화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전문서비스 분야 분쟁 조정 활성화
4. 소비자 피해 구제기능강화 및 지방소비자행정의 강화 -소비자 단체의 피해구제 기능 강화 -소비자 행정의 활성화(중앙, 지방간의 협동체제 강화)	<소비자피해 구제 기능강화> -소비자 상담실 활성화로 피해 구제 강화 -소비자 단체 지원육성으로 소비자 보호사업	<소비자피해구제기능강화 및 지방소비자 행정 활성화> -리콜제등 제(개정), 소비자 피해 보상관련 법규의 홍보강화 -소비자업무담당 공무원업무 연찬실시: 소보원 위탁교육 -피해상담및 구제전담창구 운영 의활성화 -소비자 감시단 활동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 -소비자 행정의 활성화
5. 소비자 자주적 역량 강화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감시 활동강화 -물가 안정을 통한 건전 소비 문화 정착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자주적인 역량 강화>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조사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단체 감시활동 -소비자 교육의 내실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환경친화적인 상품 소비 촉진홍보 -소비자 단체 직원 M.T실시

<표 8> 계속

기본방향	광주	강원	전북
1.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대응책 강구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기회확대	<온라인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반 구축> -소비자 환경의 변화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내실화	<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제도의 확립>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운영(시, 군) -소비자 생활 정보 적극 제공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질서에 대한 소비자 순회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운영
2. 소비자 안전대책 적극 추진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리콜제 활성화) -공산품,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통단속 및 감시 강화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강화 -가스 사용 및 공급시설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내실화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 -물가 감시 활동강화 -물가 감시 협의회 운영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제도, 홍보강화 -식품안전사고 발생대비 조치 계획 -농약 안전사용교육 및 홍보강화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통신판매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격 표시제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강화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및 품질 인증제 확대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불법음반, 비디오품, 게임물 단속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소비자 소식지 발간배포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일반소비자 및 시민교육 -제4회 전북소비자대회개최 -소비자 단체 캠페인 활동전개 -소비자보호관련 공직자 교육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2001농산물 원산지표시지도단속 -수산물원산지표시 교육홍보 및 지도 단속 -음란폭력등 청소년 유해물 단속강화 -부정축산물단속 -불법음반, 비디오품, 게임물단속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소비자 소식지 발간배포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일반소비자 및 시민교육 -제4회 전북소비자대회개최 -소비자 단체 캠페인 활동전개 -소비자보호관련 공직자 교육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2001농산물 원산지표시지도단속 -수산물원산지표시 교육홍보 및 지도 단속 -음란폭력등 청소년 유해물 단속강화 -부정축산물단속 -불법음반, 비디오품, 게임물단속강화
4. 소비자 피해 구제기능 및 지방소비자행정의 강화 -소비자 단체의 피해구제 기능 강화 -소비자 행정의 활성화(중앙, 지방간의 협동체제 강화)	<소비자정보제공강화 및 소비자 교육의 활성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소비자 교육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강화>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소비자 보호원 교육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강화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단속강화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소비자 행정 활성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5. 소비자 자주적 역량 강화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물가 안정을 통한 건전 소비 문화 정착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 및 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교육 기회의 확대로 자주적 해결능력 함양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의식 고취 및 소비문화 확산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소비자 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소비자 단체 임,직원 연수회 개최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 활성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물가 감시활동 강화 -물가 감시 협의회 운영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제도, 홍보강화

첫째, 조례내용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소비자조례로서의 역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지원행정과 소비자 복지행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아직 조례의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정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의 조례내용도 지원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여 입법활동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보호조례의 중심 내용인 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소집을 하지 않거나 소집을 하더라도 물가관련내용과 같은 회의가 많고 소비자보호시책 관련회의는 적었다. 결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비나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최근에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보호조례에 지방소비자행정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지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교육이나 소비자소송지원, 소비자문제 전문상담실의 설치 등을 규정한 각 광역단체들의 예를 살펴보고 지역에 맞는 지원행정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역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 앙양이다. 지방공무원들의 학력수준이 낮고 중앙으로의 진출을 바라며 중앙의 고압적인 지시에 복종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순환보직으로 각 행정기능 영역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인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되고 특정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세욱, 1997: 599-600). 이와 같은 내용이 소비자행정분야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주장될 수 있다. 소비자행정의 전문화 고도화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우수한 자질이 요구되므로 소비자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지방소비자행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행정내용이 소비자문제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담당자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부서에 소비자문제 전담인력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포함하도록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소비자상담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으로 시행될 예정인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지방소비자행정업무 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분야를 상담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지원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시행 담당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이 현재의 경우와 같이 물가인상 심의와 같은 개별사항 심의에 치우치기보다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계획하거나 시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보다 소비자행정 전반에 대한 시각을 확립하고 시행하는데 각 분야의 해당위원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비자행정에 대한 시책을 나름대로 수립할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학을 전공한 전국의 각 대학교수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정책수립에 도움을 준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등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지방소비자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의 분석이나 위원회의 운영분석에 대한 비교가 다소 평면적이어서 생생한 운영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에 대해 회의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소비자보호조례의 각 조항에 대한 집행여부와 성과를 추적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소비자정책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지표로 정하여 정책집행의 효과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 추후 정책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어 가는 변화과정을 파악하거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해서도 결과의 평가나 피드백과정에 대한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진(1996).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체계에 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17, 1-15.
- 강성진, 김인숙(1996).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소비자보호원.
- 강성진, 김인숙(1997).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 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성호, 황아란(1999).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박명사.
- 박지영(2002). 지방소비자지원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1991).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성사.
- 송인숙(1998). 부천시 지역 소비자 지원행정 현황파악과 소비자요구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53-70.
- 송인숙, 이승신, 제미경, 김경자(1998). 기관별 소비자상담업무현황 및 발전방향-기업, 행정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9(3), 21-40.
- 신원득, 박인섭(1991). 소비자보호조례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여정성(1998).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현황과 활성화 방안. 소비자학연구, 9(3), 59-74.
- 이광용(2000).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욱(1997).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법문사.
- 제미경, 송인숙(2001). 소비자요구도 분석을 통한 소비자행정의 발전방향 -부산시 지원행정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4(2), 43-56.
- 지방행정연구소 편(2000). 지방자치법해설. 지방행정연구소.